

제 호

기 증 서 약 서

문화유산명	수 량	크 기	비 고
합계: 건 점			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에 기증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법인 · 단체명: (대표자 서명 또는 인)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국가유산청장 귀하